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4. 23. 2014고합1415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최행관(기소, 공판), 박진원, 이찬규, 국상우(공판)

【변호인】법무법인지향외3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]